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 김광수(노원) 의원

나. 의안번호 : 제2254호

다. 발의일자 : 2017. 11. 10

라. 회부일자 : 2017. 11. 14

2. 제 안 사 유

- 현행 서울특별시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과 기업이 함께 서울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시민 환경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촉위원의 임기를 연임으로 규정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2항)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5. 검 토 의 견

가. 개요

- 동 개정안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시민 환경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어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위원의 임기와 운영, 활동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2015년 말 기준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3,171명 중에 6년을 초과하여 장기 연임한 위원은 118명(3.7%)이었으며, 이중 10년 이상 연임한 위원이 44명이고 20년 이상 연임하고 있는 위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¹⁾.

이에 위원의 장기 연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6년 7월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제8조제3항)하여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음.

-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경우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1기 위원 위촉 시('17.2.1 ~) 위원 연임 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운영²⁾하고 있으며,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지속사업 추진 등 위원회 운영상 어려움을 들어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 기한을 6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기후환경본부 검토의견〉

안 제3조제2항을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 조문 수정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16.6, 행정자치위원회)

2) 기수별 연임 기한 6년을 초과한 위원 현황
: 6명/6기, 4명/7기, 3명/8기, 8명/9기, 2명/10기, 해당사항 없음/11기

연임 기한 6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는 2년 임기의 경우 연임 3회로 6년까지는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후환경 본부에서 제시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동 개정안과 같이 연임을 1회로 한정함에 따라 위원의 연임 기한이 4년 이하가 되면 지속사업의 추진 등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의견과 연임 기한 제한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투명성 확보 및 폭넓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푸른도시국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 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을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17.5.18)한 바 있음.

- 한편, 지난 2월 1일에 위촉된 현 제11기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시점인 2019년 1월 31일 기준 연임 기한 6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위촉하였기 때문에 동 개정안과 같이 위원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4년까지 연임 가능) 가능하도록 한다면, 조례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부칙 수정).